

제14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운영

4의3.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제15조의2 중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여권번호”를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별표 2 제2호하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 2	100	200	500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 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 3	100	300	300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6호,
2012.8.22,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 등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축산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5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 검사결과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작업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이의신청”을 “재검사 요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7조의2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6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법 제9조제11항”을 “법 제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이의신청”을 “재검사 요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